

재외국민의 세무 안내

2019. 5.



본 자료에서는 재외국민에게 필요한 세무관련 사항에 대해 2019.5월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개괄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. 개별 납세자의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반드시 **한국세법과 조세조약**을 확인하고 각국 과세관청 또는 조세 전문가의 조력을 받은 후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.



I

거주자·비거주자 구분의 중요성

- ◆ (구분의 중요성) 과세소득의 범위, 적용세율, 과세방법 등이 다름

거주자 여부	「소득세법」상 거주자	「소득세법」상 비거주자
과세소득의 범위	전세계 소득	국내원천소득에 한정
적용세율	누진세율 (6 ~ 42%)	20%, 10%, 2%,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등
과세방법	종합과세 신고·납부 (일부 분리과세 원천징수)	분리과세 원천징수*
해외금융계좌 신고	○	×
자료제출 의무	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 등 관련 자료	없음

* 국내사업장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과세

- ◆ (이중거주자인 경우)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조세조약을 기준으로 판정

한국법상 현지법상	비거주자	거주자
비거주자	양국 비거주자	① 한국 거주자
거주자	② 현지국 거주자	③ 이중 거주자

- ① 「소득세법」에 따라 한국 거주자로 구분(우측 II 참고)
- ② 현지 세법에 따라 현지국 거주자로 구분
- ③ 상기 ① 및 ②에 따라 양국의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자·비거주자를 판정(우측 II 참고)



II

조세목적상 거주자·비거주자 구분

- ◆ 한국 「소득세법」상 “**거주자**”란 **국내에 주소**를 두거나, **183일 이상 거소**를 둔 개인을 말하고, “**비거주자**”란 **거주자가 아닌 개인**을 말함

○ 거주자 판단기준이 되는 주소와 거소의 개념은 아래와 같음

- ◆ **(주소)**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
- ◆ **(거소)**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

- ◆ 한국 「소득세법」상 **거주자 · 비거주자 구분 기준**

1. 주소로 판정 (체류기간 상관없이 주소 有 : 거주자)	2. 거소로 판정 (체류기간 충족 시 : 거주자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경우로 보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-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,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-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*인 경우 * 연속 거주할 필요는 없음 -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이고 출국목적이 관광, 질병의 치료 등 일시적인 출국도 국내 거주기간에 포함

- 3. **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(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%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)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**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**거주자**로 봄

- 위 간주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주소 판정 가능

거주자 · 비거주자는 주민등록이나 국적(國籍)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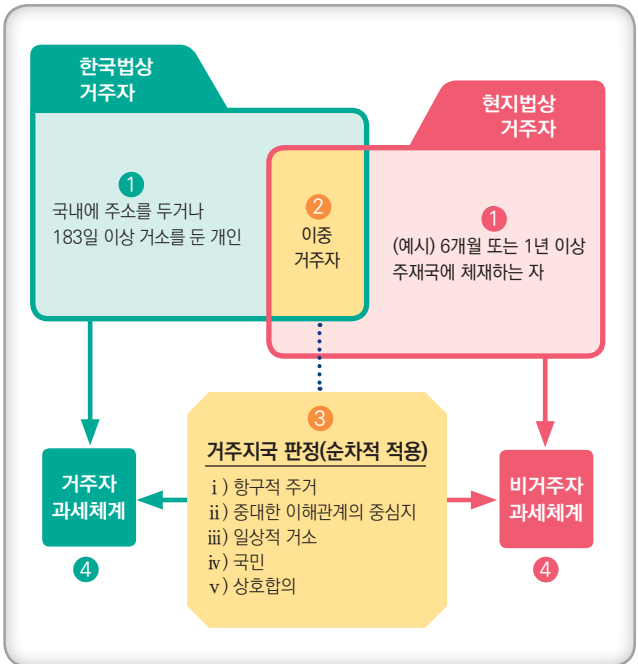
◆ 세계 각국의 거주자 규정 : OECD 웹사이트 참조

○ <http://www.oecd.org/tax/automatic-exchange/crs-implementation-and-assistance/tax-residency/>

◆ 해외현지 국가의 규정에 따라 조세목적상 해당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해당 국가에서 폭넓은 납세의무를 부담

◆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(조세조약 적용)

- 거주자 정의에 관한 각 국의 국내법 규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일인이 둘 이상의 국가에서 조세목적상 거주자가 되는 이중거주자(이중과세)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,
- 이 경우 조세조약상 거주지국 판정 기준(③)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거주지국을 판정



○ 조세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다르니 [국세법령정보시스템(<http://txsi.hometax.go.kr/docs/main.jsp>)-법령-조세조약]링크 참조

III

거주자 과세소득 범위 및 과세방법

◆ 거주자 과세소득의 범위 : 전세계 소득

- 「소득세법」상 거주자인 납세의무자는 전세계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·납부해야 함

※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대상

- 「소득세법」상 거주자*가 국외자산을 양도하고 자산 소재지국에 현지법에 따라 세금을 신고납부하였더라도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·납부 하여야 함

*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해당

◆ 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: 이자, 배당, 사업, 근로, 연금 및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퇴직소득, 양도소득은 분류과세

◆ 이중과세문제 해결 : 외국납부세액공제

- **(이중과세)** 국외원천소득이 현지(원천지국)에서 과세되는 경우 거주지국인 한국에서도 합산 과세되므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
- **(외국납부세액)** 외국납부세액을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는 방법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
 - (세액공제방법)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한도로 공제하고 미공제 잔액은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
 - (필요경비산입 방법) 국외원천소득이 사업소득일 경우 외국납부 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

IV

종합소득세 확정신고·납부

- ◆ **(신고기한)** 직전 연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매년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·납부하여야 함

- ◆ **(신고방법)**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전자신고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

*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

- ◆ **(납부방법)** 세금 납부는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 등 국고수납 대리점에 직접 납부하거나, 인터넷을 통해 전자납부할 수 있음
 - 홈택스로 전자신고하면 출력되는 납부서를 이용하여 은행 등에 납부하거나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도 전자납부(공인인증서 인증 필요)할 수 있음

V

해외직접투자·해외부동산 등에 대한 자료제출

- ◆ **(제출 의무자)** 해외현지기업, 해외부동산 등에 투자한 「소득세법」상 거주자*
 - * (제출의무 면제)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
- ◆ **(제출대상자료)** ①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②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
③ 손실거래명세서 ④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
⑤ 해외부동산 취득·투자운용(임대) 및 처분명세서
- ◆ **(제출 방법)**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
- ◆ **(미(거짓)제출한 경우) 과태료 부과**
 - 해외직접투자 : 건별 5백만원(5천만원 한도)
 - 해외부동산 : 취득가액의 1% (5천만원 한도)*
 - * '20년 귀속분부터 취득·처분가액 및 운용소득 등의 10%(1억원 한도)
 - 취득자금 미소명시 : 미소명 금액의 20%(19년 귀속분부터)

VI

해외금융계좌 신고

- ◆ **(신고의무자)** 「소득세법」상 거주자*
 - * (신고면제)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및 2년('19년 보유분부터 1년)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은 신고의무 면제
- ◆ **(신고기준금액)**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**5억원***을 초과
 - * 2018년 신고대상(2017년 보유분)까지는 10억원
- ◆ **(신고방법)** 신고대상 연도의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다음 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
- ◆ **(미신고에 대한 제재)** 과태료 부과¹⁾, 소명의무²⁾,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³⁾
 - * 1) 미(과소)신고 금액의 최고 20%, 2) 미(거짓) 소명 금액의 20% 과태료
 - 3) 미(과소)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금액의 13~20% 벌금
- ◆ **(상세자료)** 「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」*
 - * 국세법령정보시스템 > 전자도서관 > 발간책자 > 국제조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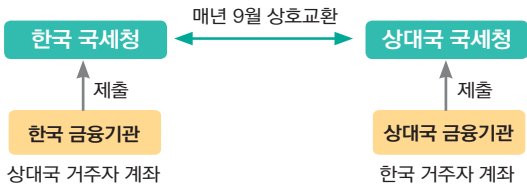


VII

금융정보자동교환

◆ 제도 개요

- (개요) 한·미·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참여국간 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하는 제도



- (대상 국가) 우리나라는 '16년 미국을 시작으로 '17년 46개국, '18년 79개국과 교환을 진행 하였으며, '19년 103개국과 교환예정
- *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참여국은 OECD AEOI포털(영문)에서 확인가능
<https://www.oecd.org/tax/automatic-exchange/international-framework-for-the-crs/>

◆ 교환 대상 및 정보

| 한·미 금융정보자동교환 |

교환정보		한국 → 미국		미국 → 한국
대상 계좌	개인	기존*	(원칙) 5만 달러초과 금융계좌 (예외) 25만 달러 이하 보험· 연금계약 계좌 제외	○연간이자 10달러초과 예금계좌 ○미국원천소득 관련 기타 금융계좌
		신규*	(원칙) 모든 금융계좌 (예외) 5만 달러 이하 예금· 보험계약 제외	
	법인	기존	25만 달러 초과 금융계좌	○미국원천소득 관련 금융계좌
		신규	모든 금융계좌	
교환 정보		○계좌보유자 정보, 계좌번호, 계좌잔액, 이자·배당소득 등		○계좌보유자 정보, 계좌번호, 이자·배당소득, 기타 원천소득 등

* 기존계좌:2014.6.30. 이전 개설 계좌 / 신규계좌:2014.7.1. 이후 개설 계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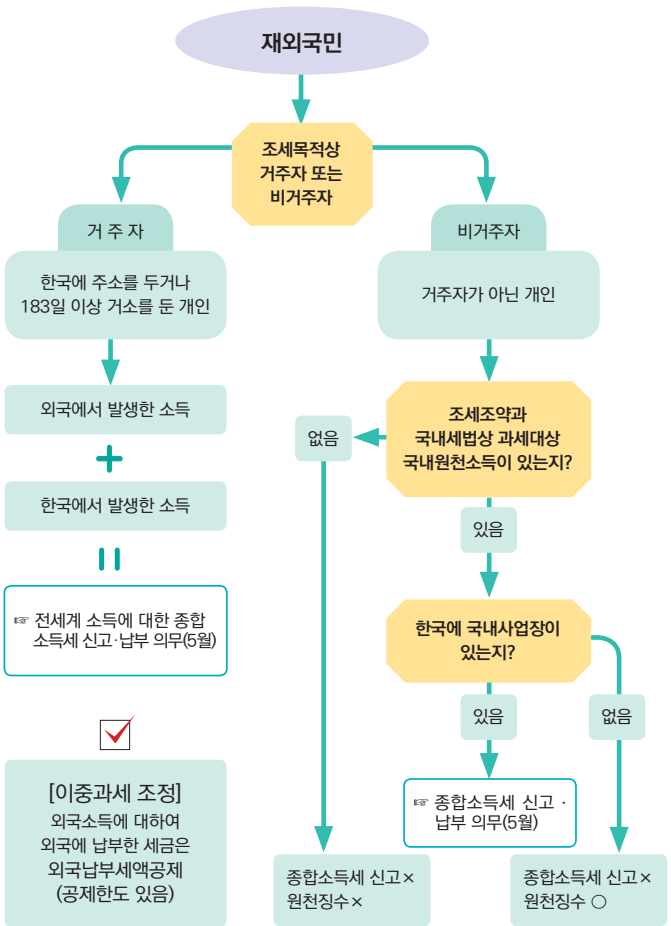
|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|

교환정보		체약상대국 ↔ 한국	
대상 계좌	개인	○모든 금융계좌	
	법인	기존*	25만 달러 초과 금융계좌
		신규*	모든 금융계좌
교환 정보		○계좌보유자 정보, 계좌번호, 계좌잔액, 이자·배당소득 등	

* 기존계좌:2015. 12. 31. 이전 개설 계좌 / 신규계좌:2016. 1. 1. 이후 개설 계좌

VIII

거주자·비거주자 구분과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등



재외국민도 조세목적상 한국의 **거주자**라면 전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으며, 한국의 **비거주자**인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음

「소득세법」상 거주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등

- ☞ 해외금융계좌 신고(6월) → VI. 해외금융계좌 신고
- ☞ 해외직접투자·해외부동산 등에 대한 자료 제출(5월) → V. 해외직접투자 등 ...

추가 문의 필요 시

국세상담센터 **126** | + 82(국가번호) - 64(지역번호) - **1 2 6**

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페이지(인터넷 상담) : <https://www.hometax.go.kr>

국세법령정보시스템 : <https://txsi.hometax.go.kr>